

4.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자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성별영향평가 의견 반영: [복지지원과-38683(2023. 10. 10.)]

조례안	수정안(검토의견)	검토결과
<input type="checkbox"/> 해당조항: 제20조(투자유치위원회)	<input type="checkbox"/> 제20조(투자유치위원회) 제2항 단서 추가 <u>‘다만,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u>	<input type="checkbox"/> 검토의견 반영

라. 기 타

- 1) 입법예고: 고성군공고 제2023-1520호
가) 예고기간: 2023. 10. 10. ~ 10. 30.(20일간)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3)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4)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 5)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5. 전문위원 검토요지

○ 개정 목적

- 본 개정조례안은 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투자기업 지원을 확대하고, 투자유치 위원회의 재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주요 검토 내용

- (안 제2조) 정의에 관한 사항으로, 투자기업을 세분화하고 관광사업, 문화콘텐츠 사업, 투자유치촉진지역, 지방투자촉진보조금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 (안 제5조의2) 신·증설 기업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2항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한도액 등에 대해서는 향후 집행기관의 추진계획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의회의 합리적인 견제를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안 제6조 ~ 제6조의2)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관광사업 및 문화콘텐츠 산업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지원규모와 관련하여 산정기준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과 경상남도 내 타시군 현황 비교(참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참고] 경상남도 내 타 시군 조례 현황

군부명	안 제6조 (대규모 투자기업)	안 제6조의2 (관광사업 및 문화콘텐츠사업)	
		일반투자	고용보조금
고성군 안	최대 200억원	최대 30억 (대규모 200억원)	최대 10억원
의령·함안(2)	최대 200억원	최대 30억원 (대규모 200억원)	최대 10억원
거창	최대 200억원	예산의 범위	규정 없음
하동·함양 합천(3)	최대 100억원	규정 없음	규정 없음
산청	의회에 동의를 얻어 별도 지원		
창녕	예산의 범위내		
남해	규정 없음		

- (안 제27조) 이중지원 금지에 관한 사항으로, 단서 신설에 따른 개정 내용에 대한 해석의 다툼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종합검토 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기업 지원을 확대하고, 일부 사항 등을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 목적과 필요성, 조례안 내용에 대한 상위법령 저촉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 다만, 안 제5조의2(신·증설 기업지원), 안 제6조(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 지원), 안 제6조의2(관광사업 및 문화콘텐츠 산업 지원), 안 제27조(이중지원 금지)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장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위원회 회의록 기재)

7. 토 론 : 없음.

8. 심사결과 : 2023. 11. 28. 수정가결

붙 임: 1. 수정안 제안서

2. 「고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3. 수정안 대비표

「고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 제안서

의안번호	제2723호 관련
------	--------------

발의연월일	2023. 11. 28.
발 의 자	최두임 의원

1. 수정이유

- 조례안의 내용 중 조례 시행상 법리 해석을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성이 있음.

2. 주요내용

- 제27조제1항제1호 중 “받은” 을 “받는” 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받은” 을 “받는” 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보조금” 을 “보조금 또는 융자금” 으로 수정함.

「고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고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제27조제1항제1호 중 “받은” 을 “받는” 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받은” 을 “받는” 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보조금” 을 “보조금 또는 융자금” 으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개정조례안	수 정 안
<p>제27조(이중지원 금지) ① 이 조례에서 정한 보조금 및 용자금 은 중복 지원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p> <p>1. 제7조에 따른 투자촉진기반 시설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p> <p>2.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신증설 지원 대상 기업이 제19조제1 항제3호의 사업장 부지매입 용자 지원을 받은 경우</p> <p>② <u>보조금</u>을 지원 받으려는 기 업이 국가나 도 등으로부터 같 은 목적의 다른 <u>보조금</u>을 지원 받은 경우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2호의 경우 는 제외한다.</p>	<p>제27조(이중지원 금지) ① ----- ----- ----- ----- -----.</p> <p>1. ----- -----<u>받는</u> -----</p> <p>2. ----- ----- ----- ----- <u>받는</u> -----</p> <p>② <u>보조금 또는 용자금</u>----- ----- ----- <u>보조금 또는 용자금</u>----- ----- -----.</p>